유권자 기본 권리 선언

- 1. 유효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권을 행사 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유효 등록 유권자란 미국 시민권자로, 만 18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이며, 중죄 의 유죄 판결로 수감 중이거나 가석방 상 태가 아니며, 현재 자신의 거주지에서 투 표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합니다.
- 2. 선거인 명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유권 자도 잠정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 다.
- 3. 투표 마감 시간 이전에 투표소로 나와 줄 을 서 있는 유권자는 투표할 권리가 있습 니다.
- 4. 유권자는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고 비밀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 5.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잘못 기입했다고 생각될 경우, 새로운 투표 용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 용지를 최종적으로 투표함에 넣기 전에 잘못 기입했다고 생각될 경우 잘못된 투표 용지를 새 용지로 교환할 권리가 있습니다. 우편으로 투표하는 유권자 역시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간 이전에 잘못 기입한 투표 용지를 선거관리원에게 반환할 경우 새 투표 용지를 요청하고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 6. 보조 없이 투표를 할 수 없는 유권자는 투 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보조를 받을 권리 가 있습니다.
- 7. 유권자는 작성한 우편 투표 용지를 카운 티 내 아무 선거구로나 반화할 권리가 있 습니다.
- 8. 유권자는 다른 언어로 작성된 선거 자료를 준비해야 할 만큼 소속 선거구에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거주민이 많을 경우 해당 언어의 선거 자료를 수령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 9. 유권자는 선거 절차에 대해 문의하고 선거 절차를 감시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유권자는 선거구 위원회와 선거관리원에게 선거 절차에 관해 문의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받거나 답변할 수 있는 적절한 공무원을 소개받을 권리를 보유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문의로 인해 직무 수행이 방해를 받을 경우 선거구 위원회나 선거관리원은 문의에 대한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0. 유권자는 모든 불법 또는 부정 행위에 대해 지역 선거관리원이나 주무장관실에 신고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이러한 권리를 거부당했다고 생각되거나. 어떠한 부정선거 또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 주무장관실 유권자 비밀 보장 수신자부담 핫라인인 (866) 575-1558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유권자 등록 진술서의 정보는 투표 장소의 위치와 투표 용지에 표시된 사안 및 후보자 등과 같은 투표 절차에 대한 공식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관리원이 사용합니다. 유권자 등록 정보의 상업적 이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유권자 정보는 주무장관의 결정에 따라 선거, 학술, 언론, 정치 또는 정부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공직 입후보자, 투표 법안 위원회 또는 기타 개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과 소셜 세큐리티 번호 또는 유권자 등록 카드에 표시된 서명은 위의 목적을 위해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 정보 사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거나 이러한 정보의 의심되는 오용 사례를 보고하려면, 주무장관실 수신자부담 유권자 핫라인인 (866) 575-1558로 전화해 주십시오.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한 유권자의 경우 비밀 유권자 신분이 부여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무장관실의 "집에서 안전하게" 프로그램 수신자부담 전화번호인 (877) 322-5227로 연락하거나 www.sos.ca.gov를 방문하십시오.